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업무상 사고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주치의 작성)'를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은 당해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평소 재해자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와 상담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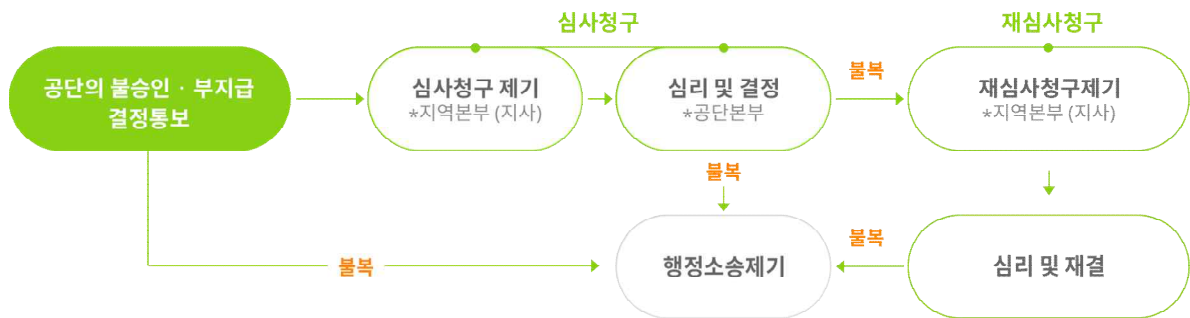
보험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분	내 용
요양급여 (법 제40조)	요양기간 중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함. 산재 승인전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자가 부담하고,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비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함.(현물급여 원칙)
휴업급여 (법 제52조)	·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급여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요양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한 경우나 할 수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상병보상연금 (법 제66조)	요양 후 2년이 지났어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병 중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보다 많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급여
장해급여 (법 제57조)	·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에 지급 · 장해등급에 지급액이 달라지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
간병급여 (법 제61조)	요양이 끝난 이후 장애상태가 1급 내지 2급의 중증장애에 해당되어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법 제62조)	· 업무상 사망의 경우 지급 ·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 연금지급이 원칙이고, 원하면 일시금 50%와 연금 50%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의비 (법 제71조)	업무상 사망의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직업재활급여 (법 제72조)	장해등급 1등급부터 12등급인 자 중에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급여

※ 관련 신청서 및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산업재해 불승인에 대한 이의 절차

- 요양급여신청,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90일 이내(결정이 있음을 안 날)에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이 불승인되고 난 후 심사 및 재심사에서 승인받을 확률이 상당히 낮으므로, 최초 신청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산재로 승인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초 신청단계부터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와 상의하세요.



잘못된 상식

- 산재는 사업주가 인정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또는 유족급여청구서)상 사업주 확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근로자와 사업주는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신청조차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며, 사업주가 신청서상의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의 주체는 근로자(근로자 사망 시 유족)**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적용제외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당해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료가 미납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법상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Q&A

Q.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일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사장님이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염려된다며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이 많으면 산재보험료율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업종별 보험료율의 50%까지 증감될 수 있음). 그러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3년간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사업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TI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유족 포함)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당해 금원만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산재에 대하여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합의금액의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좋습니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와 상담하세요!